

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'플러스 모바일보증 보증부여신 운용 및 업무위탁에 관한 협약' 체결 동의서 및 위임장 제출(안)

생업유지로 재단과 금융회사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및 인터넷 기반의 보증상품을 개발·시행하고자 '플러스 모바일보증 보증부여신 운용 및 업무위탁에 관한 협약' 체결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1. 관련문서

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「플러스 모바일보증 취급기준 시행알림 및 협약 동의서 제출 요청」 (보증2016-7408, 2016.03.28.)

2. 주요내용

가. 협약내용 : 플러스 모바일보증 보증부여신 운용 및 업무위탁에 관한 협약

나. 금융회사 : 기업은행, 우리은행

다. 협약체결일 : 4월 5일(화)

라. 협약에 의한 보증내용

① 보증대상 :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으로 실제경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은행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보증 신청하는 개인사업자

② 보증비율 : 85%

③ 보증한도 :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운용

구분	1~2등급	3~4등급	5~6등급
보증한도	17백만원	12.75백만원	8.5백만원
대출한도	20백만원	15백만원	10백만원

※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회사의 추가신용대출 가능 (최대 5백만원)

④ 보증방법 : 개별보증

⑤ 자금용도 : 운전자금

⑥ 보증특약 : 본 보증은 귀 은행과의 “플러스 모바일보증 보증부여신 운용 및 업무위탁에 관한 협약”에 의한 보증임

3. 추진방법

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협약 체결

4. 위임내용 : 위임장 <붙임1> 참조

가. 협약 체결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

나. 기타 관련된 부대 행위 등

다. 협약체결 금융회사 추가시 협약업무 진행

추후 현 협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협약체결 금융회사를 추가할
경우 재단의 별도 동의·위임없이 중앙회가 협약체결 진행 가능

- 붙임 : 1. 협약체결 동의서 및 위임장 1부.
2. 플러스 모바일보증 보증부여신 운용 등 협약서 1부. 끝.

★과장 팀장 부장 이사장
협조자 법무팀장

감사실장 보증지원부 감사번호 88

시행 보증지원부-218 (2016.04.04.) 접수 ()

우 121-705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16 /http://www.seoulshinbo.co.kr

층
전화 02-2174-5214 /전송 02-3278-8117 / sptunik@seoulshinbo.co.kr / 공개